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315817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31581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7가단1298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윙평

담당변호사 김대진

피고, 항소인1. C

피고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덕

3. B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아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6 내지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피고 6 내지 1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14. O

15. P

16. Q

변론 종결 2021. 9. 29.

판결 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7가단129824 판결

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산시 R 임야 92,8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281m² 중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15, 14,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545m² 중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15, 14,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54,545m²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5, 6, 18,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부분 6,612m²은 피고 G, H, I, J, K, L, M, N은 각 9분의 1 지분, 피고 B, O, P, Q는 각 36분의 1 지분 공유로, 같은 도면 6, 7, 17,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5,917m²는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7, 8,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5,917m²은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8, 9, 10, 15,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4,876m²은 피고 E의 소유로, 같은 도면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4,959m²은 피고 F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16, 17, 18,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C, D, G, H, I, J, K, L, M, N, B, O, P, Q 및 원고의 공유로, 별지2 도면 표시 1, 2, 19, 18, 17, 16, 15, 14,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5,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E의 단독 소유로, 별지2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F의 단독 소유로 각 분할한다.1)

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청구(공유물분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경매분할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공유물분할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주요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안에 대한 입장도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제1심에서의 주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및 제3항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서범준

판사박치봉

판사서영애

별지

1)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후 당심 변론과정에서의 피고 C의 주장과 2021. 9. 24.자 준비서면에서 마지막으로 진술된 피고 C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원고와 피고들이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이 분할되는 것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기재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항소하면서 공유물분할이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